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안내문

※ 동 시행계획은 추후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
세부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대전 ·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

❖ 정부(고용노동부)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·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(3조원) 지원 계획

◈ **지원대상 :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** (공동주택 경비·청소원은 예외)

①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

②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

③ 기존 노동자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

◈ **지원제외**

① 과세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자 ②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

③ 국가 및 공공기관 ④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

◈ **지원금액** : 지원요건 해당 **근로자 한 명당 13만원** 지원

단, 단시간 노동자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

◈ **지원체계 및 절차**

① 접 수 처 : **고용부 고용센터, 지자체 주민센터, 4대보험공단**

② 지급방법 : 현금지급 & 보험료 상계 방식중 사업주 선택

③ 신청기간 : 2018.1.1.~12.31, **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**

④ 신청서류 : 별도 신청서 없이 기존 '**고용보험 신고서**'로 활용

*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는 별도 신청서 + 근로관계 확인서(근로계약서 등)

◈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, **고용노동부 콜센터(고용센터 ☎ 1350, 근로복지공단 ☎ 1588-0075)**로 연락 바람

<참고>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

1 두루누리사업(10인 미만 사업장) 지원 강화

○ 지원대상 기준 상향: (현행) 월 보수 140만원 미만 →
(개선) 190만원 미만(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과 통일)

○ 신규가입자 지원비율 인상: (현행) 신규 60%, 旣 가입 40% →
(개선) 신규 90%(5인~10인 미만 80%), 旣 가입 40%

2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(30인 미만 사업장)

○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중 건보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 보험료 경감(보험료의 50% 경감)

3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(10인 미만 사업장)

○ (현행) 중소기업이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시 사회보험료 부담액 일정비율 세액공제

○ (개선) '18.1.1 현재 재직중인 최저임금 100~120%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실부담액의 50%를 2년간 세액공제

☞ 부담 경감방안 시행시, '18년 기준 노동자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경감 前 13.8만원에서 경감 後 1.7만원으로 감소(△12만원)

(단위: 원)		합 계	고용보험	국민연금	건강보험
보험료율(%)		8.75	0.9	4.5	3.35
경감 前 월보험료		137,700	14,160	70,820	52,720
경감방안	두루누리 지원 강화	76,480	12,740	63,740	-
	건보료 감면	26,360	-	-	26,360
	사회보험료 세액공제	17,420	700	3,540	13,180
	합 계	120,280	13,460	67,280	39,540
경감 後 월보험료		17,420	700	3,540	13,180

* 5인 미만 사업체, 월 보수 157만원(최저임금 100%) 노동자 기준, 산재보험 제외

참고	근로시간 단축

1. 제도현황

□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

※ 근로기준법(§11)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적용이 원칙이나, 예외적으로 §54(휴게), §55(휴일) 조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

○ **총 68시간** = 40시간(근무시간) + 12시간(연장근로) + 16시간(휴일근로)

◈ **근로시간** (제50조) : 1주간 근로시간 **40시간**
+ 연장근로 (제53조) : 당사자 합의로 1주에 **12시간 연장**
+ 휴일근로 (고용부 행정해석) : 토8 + 일8 = **16시간 연장**
= 총 68시간 가능

□ **임금할증**(제56조) : **연장근로**와 **야간근로**(오후 10시~오전 6시) 또는 **휴일근로**에 통상임금의 **100분의 50 이상을 가산**하여 지급

○ 이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첩 가산(50%+50%) 여부가 문제

※ 고용부 행정해석
○ 휴일근로 8시간 이내 부분 : 휴일근로수당 50% 가산
○ 휴일근로 8시간 초과 부분 : 휴일근로수당 50% + 연장근로수당 50% 가산

※ 관련판례 : 서울고등법원
○ 그간 68시간으로 보던(고용부 해석)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보고,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인정 (50+50=100% 가산)
*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① 휴일근로 중복할증 여부 ② 1주 근로시간 한도에 관한 엇갈린 판결 5건이 회부되어 심리중

□ **새정부 정책방향 :** 현 정부는 **휴일근로 포함 주 52시간 준수**, 특례·제외업종 축소 등을 통해 **'21년 연 1,800시간대 실현 추진**

구 분	세부내용
대선 공약	▪ 연장근로(휴일 포함)를 포함한 법정근로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전면이행 → 중소영세 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▪ 연장근로 제한법제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(법 제59조) 및 적용제외 산업(제63조) 축소와 1주 60시간 상한 도입
일자리 100일계획	▪ 법정근로 주 52시간 철저 준수 : 주 68시간 행정해석 폐기도 검토 ▪ 근로시간 단축 피해기업에 대한 보완대책 동시 시행

2.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의견

□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

① **(인력부족·생산차질)** 중소기업 **인력부족률이 2배 상승**(2.9 → 6.4%, 중기연 '17.6), 중소기업 **76.9%가 생산차질 우려**(중기중앙회-경총 '13.11)

② **(인건비 부담 증가)** 한국경제연구원 12조원 추산

③ **(휴일근로 중복할증시 추가임금)** 중소기업 **5조원 추가부담 예상**

□ 중소기업계 의견

◈ 장시간 근로 관행의 **개선 필요성은 공감**, 인력 부족과 생산량 감소, 비용증가 등 **중소기업 현실을 고려**해 충분한 **유예기간**을 두고 **단계적으로 적용**

① 영세기업 충격 완화 위해 중소기업 **규모별로 연차별 적용**

②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**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**

③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킴에 따른 **중복할증 불인정**

④ **근로시간 특례업종 조정**에 따른 충격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

3. 주요쟁점

① 근로시간 단축(주 68 → 52시간) 단계적 적용

<table>
<tr><th rowspan="2">종사자 수</th><th rowspan="2">노사정 합의안
('15.9월)</th><th>환노위 법안소위
('17. 3월)</th><th colspan="2">환노위 법안소위
('17. 8월)</th><th rowspan="2">중소기업계
의견</th><th rowspan="2">사업체 수
(%)</th></tr>
<tr><th>논의안</th><th>민주당</th><th>한국당</th></tr>
<tr><td>1000명 이상</td><td>1단계</td><td rowspan="2">1단계 (2019)</td><td rowspan="2">1단계
(2019)</td><td rowspan="2">1단계(2019)</td><td rowspan="2">1단계 (2019)</td><td>0.08</td></tr>
<tr><td>300~999명</td><td>2단계</td><td>0.42</td></tr>
<tr><td>100~299명</td><td>3단계</td><td rowspan="4">2단계 (2021)</td><td rowspan="2">2단계
(2020)</td><td rowspan="2">2단계(2021)</td><td>2단계 (2020)</td><td>1.96</td></tr>
<tr><td>50~99명</td><td rowspan="3">4단계</td><td>3단계 (2022)</td><td>4.16</td></tr>
<tr><td>20~49명</td><td rowspan="2">3단계
(2021)</td><td rowspan="2">3단계(2023)</td><td>4단계 (2023)</td><td>12.94</td></tr>
<tr><td>20인 미만</td><td>5단계 (2024)</td><td>80.44</td></tr>
</table>

* 2015년 노사정 대타협 결과를 토대로 새누리당에서 노동개혁 입법의 하나로 발의

② 특별연장근로 허용 : 필요시 주 8시간 추가허용

중소기업계 의견	現 환노위 소위안	19대 국회 발의안('15) (구 노사정합의)
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 상시허용(8시간)	불허	-사유 : 주문량 증가 등 -절차 :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-상한 : 1주 8시간 설정하여, 4년간 허용 후 지속여부 검토

③ 휴일근로 중복할증 :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여부

중소기업계 의견	現 환노위 법안소위안	19대 국회 발의안('15) (구 노사정합의)
중복할증 불인정(50%)	중복할증 인정(50%+50%)	8시간 이내 휴일근로 : 50% 8시간 초과 휴일근로 : 100%

④ 근로시간 특례업종* 축소(26개 → 10개)

* 환노위 소위(7.31)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방향에 합의(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특례업종에서 제외), 구체적인 존치 업종은 실태 점검 후 논의예정

현 행 (26개)	노사정합의안 (10개)
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,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,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	**유지**
보관 및 창고업,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, 도매 및 상품중개업, 소매업,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	제외
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, 방송업	**유지**
우편업	제외
전기통신업	**유지**
교육서비스업, 연구개발업,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, 광고업	제외
보건업, 하수·폐수 및 분뇨처리업	**유지**
숙박업, 음식점 및 주점업, 건물·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, 미용·욕탕 및 유사서비스업	제외
사회복지서비스업	**유지**